

2026년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정읍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인원	기간	담당업무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기타 예방접종, 보건 교육 등 보건소 관련 사무 등

※ 최초계약 시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 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임용 자격

가. 기 준 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다.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연 령 : 18세 이상

마. 임용분야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기 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 력 기 준	《공 무 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무경력은 관련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5. 보수 기준

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의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능력과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범위 내에서 결정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기본연봉	비 고
보건소장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70,490천원	

나.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6.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를 통해 임용자격요건 심사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 직무수행요건 심사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요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직무수행능력 요건(5):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 선발시험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 2~3명 선발만 하고, 최종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7.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10.19. ~ 10.23. (5일간)	'26.10.28.(예정)	추후 별도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5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정읍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빠른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직접제출

② 등기우편접수

- 주소 : 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234, 정읍시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6. 10. 23.)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063-539-5142)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현금불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동봉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예정
(전자우편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등기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정읍시 수입증지, 정읍시청 민원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별지 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별지 4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 5호 서식)

라.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6호 서식)

마. 주민등록 등·초본 1부(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자.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8호 서식)

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 9호 서식)

타.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0호 서식)

파.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9.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 시 반환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7일 이상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최초 공고 시 응시한 자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제출서류로 같음)

바.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정읍시 홈페이지 시험/인사란에 공고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제출서류(졸업·학위·경력·자격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 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063-539-5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직급
정 읍 시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4. 주요업무내용	비 중
가.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0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10
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10
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10
아. 기타 예방접종, 보건 교육 등 보건소 관련 사무 등	10

5.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6. 필요지식 및 기술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드시 표기) ① 필수 자격증 : [√] 무, [] 유 ② 기타 필수요건 : [√] 무, [] 유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자격증 기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표기)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실적요건
	☐ 해당없음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i)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i)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 업무개선능력 iii) 자원활용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i)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② 외국어 : [√] 무, [] 유 ③ 정보화능력 : [√] 무, [] 유 ④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6.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7. 최종학교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 기재)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 직역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9.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 제출시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폐업시 폐업자정보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 자격증 사본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4.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 정리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2026년 월 일

정읍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26년 월 일 정읍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정읍시수입증지 : 정읍시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		응시 분야		성명	

나. 응시 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시간 (주당)	직 위	담당업무
		00.00.00~00.00.00 (0년 0월 0일)	주 시간		자세히 작성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하며,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 자격증, 경력은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것만 기재,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학위논문 주제 (해당자만 기재)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 이내)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 분야		응시 직급		성명	
2026. 응시자 : (서명)					

-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며
-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 분야		응시 직급		성명	
2026. 응시자 : (서명)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등과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②직무수행 방향 및 목표 ③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응시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기 위 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 격 증 기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 무 원 경 기 력 준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경 기 력 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발급번호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업무)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제출용도	정읍시 감사과장 임용시험 제출용	
			담당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읍시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동의여부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동의()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동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정읍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조회, 확인서 발급 등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정읍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